

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

회원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3년 9월 6일
 1차 개정 2014년 2월 24일
 2차 개정 2015년 12월 11일
 3차 개정 2016년 4월 26일

< 신구대조표 >

구분	주요 내용	
	변경 전	변경 후
제3장 회원의 의무	<신설>	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본 회 회칙 제8조에 근거한다. <신설 2016.04.26.>
	<신설>	제9조(연회비 및 보수교육 의무 면제) <신설 2016.04.26.> ① 연회비 및 보수교육 면제기준은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. 1. 6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,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기타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. 기타 본 회에서 의무 면제로 판정된 자 ② 의무 면제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을 위해 평점을 관리중인 자는 본인의 평점 산정방식에 따라 면제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. ③ 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한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본 회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. ④ 연회비 및 보수교육 의무를 제외한 본 회의 회칙,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.
		※ 제9조 이후부터 전체 번호 수정됨.

구분	주요 내용	
	변경 전	변경 후
제4장 회원의 재가입	제11조(회원의 재가입) ① 본 회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협회원의 권리를 제한당한 자가 탈퇴한 후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,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을 이행한 후 재가입 신청서[별첨 5 참조 <개정 2015.12.11.>]를 본 회에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단,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의 미납된 회비를 소급하여야 하며,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한다. <개정 2015.12.11.>	제13조(회원의 재가입) ① 본 회 회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협회원의 권리를 제한당한 자가 탈퇴한 후 재가입하고자 할 때에는, 권리 회복을 위한 조항을 이행한 후 재가입 신청서[별첨 5 참조 <개정 2015.12.11.>]를 본 회에 제출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. 단,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의 미납된 연회비를 소급하여야 하며,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한다. <개정 2015.12.11.> <개정 2016.04.26.>